#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차규근・이해민・서왕진

김준형 • 강경숙 • 박은정

신장식 · 김재원 · 김선민

황운하・조 국・정춘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.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, 주주총회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(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)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

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(안 제542조의14 신설) 주주들의 주 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 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
- 2.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
- 4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42조의14(총회의 결과 공고) ① 상장회사는 총회가 끝난 날부터 1 주 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, 각 안건별 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	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
등) ① · ② (생 략)	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	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
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	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
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	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, 사업개	1.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
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	2.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
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	보수에 관한 사항
다. 다만, 상장회사가 그 사항	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	관한 법률」 제159조에 따른
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	사업보고서
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4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
<u>니하다.</u>	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
	<u> 감사보고서</u>
	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사항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542조의14(총회의 결과 공고)
	① 상장회사는 총회가 끝난 날
	부터 1주 내에 총회에 출석한
	주주의 의결권 수, 각 안건별
	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
	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식

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